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20 발의연월일: 2025. 2. 1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조계원 · 허 영

박민규 • 박희승 • 신영대

김우영 • 박홍배 • 이원택

김한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누진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 모하고 있으나, 급격한 물가상승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저소득 및 중산층의 세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음.

특히, 과세표준구간에 따른 세율 차이가 급격한 측면이 있고 고소득 층과 저소득·중산층 간 세율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조세 형평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. 또한 현행 소득세 과세 구조는 물가상승에 따른 명목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체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가계 부담 완화와 조세 정의 실현 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55조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1항 표 외의 부분 중 "다음의"를 "해당 연도의"로 하고, 같은 항 표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"제1항"을 "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해당 연도의 세율은 다음의 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 및 세율 (종합소득과세표준구간별로 적용하는 백분율은 제외한다)에 기준 연 도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인 물 가조정계수(이하 "물가조정계수"라 한다)를 곱하여 매년 정한다.

종합소득)]]	
과세표준	세 율 	
1,4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6퍼센트	
1,400만원 초과	04마이 : (1 400마이 이 크리쉬드 그레이 15코세트)	
5,000만원 이하	84만원 + (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)	
5,000만원 초과	624만원 + (5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3퍼센트)	
8,000만원 이하	024인천 + (5,000인천을 소파하는 급색의 25퍼센트)	
8,000만원 초과	1 214마이 + (9 000마이 9. 호코쉬노 그레이 20교세트)	
2억원 이하	1,314만원 + (8,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퍼센트)	
2억원 초과	4014마이 - (9허이 > 코코카노 그레이 26교계트)	
3억원 이하	4,914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6퍼센트)	

3억원 초과	8,514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)	
5억원 이하		
5억원 초과	1억6,514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4퍼센트)	
10억원 이하		
10억원 초과	3억8,514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퍼센트)	
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조정계수를 매년 12월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5조(세율) ① 거주자의 종합소	제55조(세율) ①
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	
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<u>다음의</u>	<u>해당</u>
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	<u>연도의</u>
(이하 "종합소득산출세액"이라	
한다)을 그 세액으로 한다.	
<u><후단 신설></u>	<u>이 경우 해당 연도의</u>
	세율은 다음의 종합소득과세표
	준구간 및 세율(종합소득과세
	표준구간별로 적용하는 백분율
	은 제외한다)에 기준 연도 소
	비자물가지수에 대한 해당 연
	도 소비자물가지수의 비율인
	물가조정계수(이하 "물가조정
	계수"라 한다)를 곱하여 매년
	<u>정한다.</u>

종합소득	세 율	
과세표준	/川 - 色 	
1,4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6퍼센트	
1,400만원 초과	84만원 + (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	
5,000만원 이하	의 15퍼센트)	
5,000만원 초과	624만원 + (5,600만원을 초과하는 금	
8,800만원 이하	액의 24퍼센트)	
8,800만원 초과	1,536만원 + (8,800만원을 초과하는	
1억5천만원 이하	금액의 35퍼센트)	
1억5천만원 초과	3,706만원 + (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	
<u> 3억원 이하</u>	금액의 38퍼센트)	
<u> 3억원 초과</u>	9,406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	
<u>5억원 이하</u>	의 40퍼센트)	
<u>5억원 초과</u>	1억7,406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	
<u>10억원 이하</u>	액의 42퍼센트)	
10여이 크리	3억8,406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	
<u>10억원 초과</u>	금액의 45퍼센트)	

-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(이하 "퇴직 소득 산출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-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 세표준에 <u>제1항의</u>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
- 2. (생 략)<신 설>

종합소득	세 율
과세표준	, E
1,400만원 이하	과세표준의 6퍼센트
1,400만원 초과	84만원 + (1,400만원을 초과하는 금
5,000만원 이하	액의 15퍼센트)
5,000만원 초과	624만원 + (5,000만원을 초과하는
8,000만원 이하	금액의 23퍼센트)
8,000만원 초과	1,314만원 + (8,000만원을 초과하는
<u> 2억원 이하</u>	금액의 30퍼센트)
<u>2</u> 억원 초과	4,914만원 + (2억원을 초과하는 금
3억원 이하	액의 36퍼센트)
3억원 초과	8,514만원 + (3억원을 초과하는 금
<u>5억원 이하</u>	액의 40퍼센트)
<u>5억원 초과</u>	1억6,514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
10억원 이하	금액의 44퍼센트)
10여이 크리	3억8,514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
10억원 초과	금액의 48퍼센트)

②
1
<u>제1항에 따른 해당</u>
<u> 연도의</u>
2. (현행과 같음)
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조정
계수를 매년 12월 고시하여야
<u>한다.</u>